

##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청년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공고

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19일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

###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

응시번호	성명	응시번호	성명
인턴-002	윤 ○ 지	인턴-003	김 ○ 진
인턴-004	김 ○ 훈	인턴-005	박 ○ 현
인턴-006	김 ○ 빈	인턴-007	이 ○ 송
인턴-009	홍 ○ 원	인턴-010	김 ○ 찬
인턴-011	이 ○ 온	인턴-014	전 ○ 구
인턴-016	김 ○ 이	인턴-017	유 ○ 완
인턴-018	박 ○ 린	인턴-019	고 ○ 나
인턴-020	김 ○ 호	인턴-021	박 ○ 빈
인턴-022	이 ○ 미	인턴-023	전 ○ 영

### 2 면접전형 계획

- 면접장소 및 일시
  - 가. 면접장소: 안산고용센터(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) 5층 프로그램실  
\* 면접자 대기장소 안산고용센터 5층 직원휴게실
  - 나. 면접일시: 2025. 3. 24.(월) 14:00~

### 3 면접 대상자 유의사항

- 면접 대상자는 신분증과 아래의 제출서류(증빙서류)를 지참한 후 위 안내시각까지 대기장소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제출서류
  - 가. 경력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(붙임 1)
  - 나.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(붙임 2)
  - 다.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)
  - 라. 우대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(해당자)

우대요건	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	증빙 서류(제출 서류)
<b>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</b>	『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 『5.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의9	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(국가보훈처 발급)
<b>장애인</b>		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, 상이군경 회원증 등 사본(원본도 지참)
<b>취업취약계층</b>	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,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	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(주민센터에서 발급)

- 면접 대상자는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응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(별도 추가시험 없음)

- 면접 불참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유의사항
  -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하나)을 소지하여야 합니다.
    - ※ 자격증 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  -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  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 -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발견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  - 면접전형 결과 최고 순위 득점자의 성적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자 모두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  - 합격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- 합격 통보된 자가 첫 출근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확인하고 채용 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**4 최종 합격자 발표**

- 2025. 3. 26.(수)(예정),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홈페이지 게재
- 문의처: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 고용관리과(☎ 031-412-1912)

**붙임 1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(서류합격자)**

**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**

성 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⑧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5. . .

성명 : (서명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귀하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9호 서식]

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채용기관	기관명	채용방법	채용직위(직급)
	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	공개채용	기간제근로자
	채용사유	청년들의 일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 확대	
채용대상자 (확인인)	성명	주소	
	연락처	생년월일	채용 예정일

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

① 가족채용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?	[ ] 예 [ ] 아니오 [ ] 해당없음
	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(자회사인 경우 모회사)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?	[ ] 예 [ ] 아니오 [ ] 해당없음
② 예외 해당 여부	①에서 “예”에 답변한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?	[ ] 예 [ ] 아니오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채용대상자(확인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① “가족채용”의 가족은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.

-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  -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